의 안 번	호	제	ই
의	결	2024.	•
연 월	일	(제	회)

의 결 사 항

공 탁 법 일 부 개 정 법 률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형사공탁금의 경우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는 등「민법」,「공탁법」에서 정한 회수제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공탁자가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이 없는 동안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갈 위험이 있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공탁자가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형사 공탁금의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 · 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00.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률 제 호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의3(공탁물 회수의 제한) ①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제5조의2에 따른 공탁을 포함한다) 공탁자는 제9조 및「민법」제489조에도 불구하고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피공탁자가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함을 통고한 경우
 - 2. 공탁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 ② 전항에 따른 공탁물 회수 및 회수제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조의3(공탁물 회수의 제한) ①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의 권
	리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제5조의2에 따른 공탁을
	포함한다) 공탁자는 제9조 및
	「민법」 제489조에도 불구하
	고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피공탁자가 공탁소에 대하여
	<u>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u>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함을 통
	<u>고한 경우</u>
	2. 공탁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
	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거
	나 불기소 결정(단, 기소유예
	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② 전항에 따른 공탁물 회수 및
	회수제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으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연 락	처	(02) 2110 - 3511		